

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21.01.12.) 사항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의 환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지원 가능한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악용 방지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도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수정 및 추가, 단서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나.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의 환수 인용 법령 변경(안 제11조제1호)
  - (현행)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
  - (개정)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
- 다. 사업비의 환수 요건의 사업지연 기간 구체화(안 제11조제2호)
  - (현행) 일정기간 이상 → (개정) 6개월 이상
- 라.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장 선정 방법 변경(안 제13조제2항)
  - (현행) 위원장은 시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
  - (개정) 위원장은 부시장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마을종합발전계획”을 “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

6.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·기관 지원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.

1.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2.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
제11조제1호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제1항제1호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

호 중 “일정기간”을 “6개월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시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”를 “부시장이 되고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사업 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<u>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</u></p> <p>4. 5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6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8조(사업 지원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</u>----- <u>획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</u>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· 기관 지원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.</u></p> <p><u>1.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</u></p>

<p>제11조(사업비의 환수)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2.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<u>일정기간</u>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</li> <li>3. (생략)</li> </ol> <p>제1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시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</u>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</u></p> <p>제11조(사업비의 환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1호-----</p> <p>2. ----- ----- <u>6개월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부시장이 되고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법령, 조례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.

소 관 부 서		새 마 을 과
입 안 자	과 장	박 경 자
	담 당	이 경 자
	담 당 자	김 가 혜 (480-6824)